

제조물책임(PL) 대응활동 추진사례



 동양매직(주)

목 차

1. 회사소개
2. PL법의 개요
3. PS활동 추진개요
4. PS활동 추진일정
5. PS활동 추진내용
6. 상세실행내용
7. 향후추진계획

◆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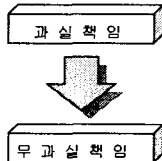
본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국제화재빌딩 18,24층)
공장	수원공장)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00-2번지(가전부문) 예산공장)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935번지(산기부문)

◆ 일반사항

항 목	내 용
창립일	1985. 7. 1
자본금	420억원
종업원수	980명
주요제품	가스오븐레인지,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정수기 외
매출액	'01년 2000억원, '02년 2400억원(목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제조자 등이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규정한 법. (1999.12 국회통과, 2002.7.1 시행)
(현재 미국('65), 일본('95), EU등 선진국과 중국('93), 필리핀('92), 브라질 등 세계30여개국에서 시행)

제조물책임(PL)법



책임은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소재를 말하는 것으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됨

과실책임

손해발생시 소비자측이 제조자(사람)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을 말함.

무과실책임

손해발생시 소비자측이 제품(사물)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을 말함.

*인사법의 기본 : 소비자입증원칙(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



결함은

일반인이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를 말하며, PL법상 설계결함, 제조결함, 표시결함으로 구분됨.

설계결함

대체설계를 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결함

제조물이 설계의도와 다르게 제조되어 결함이 발생한 경우

표시결함

적절한 설명, 지시, 경고를 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은 부주의 등으로 실수 유발한 것을 말하며 결함은 결과자체가 전부이므로 PL법 이후에는 소비자의 입증해야 할 부담이 경감됨

과실의 입증

제조자의 과실(실수) 입증

제조자의 무엇이(어떤 실수가) 피해를 유발했는지를 입증한다

입증이 어려움

결함의 입증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입증

그 제품의 어디에 문제가 있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한다

입증이 쉬움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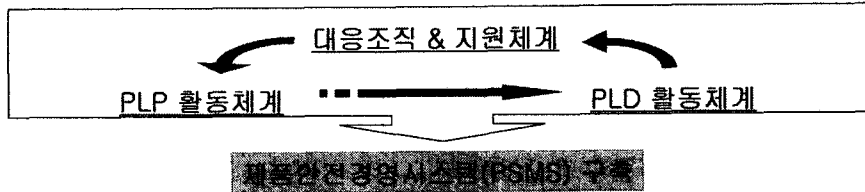
1.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2. 손해의 발생
3.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

PL법상 손해배상 책임요건

1. 제조물의 결함
2. 손해의 발생
3.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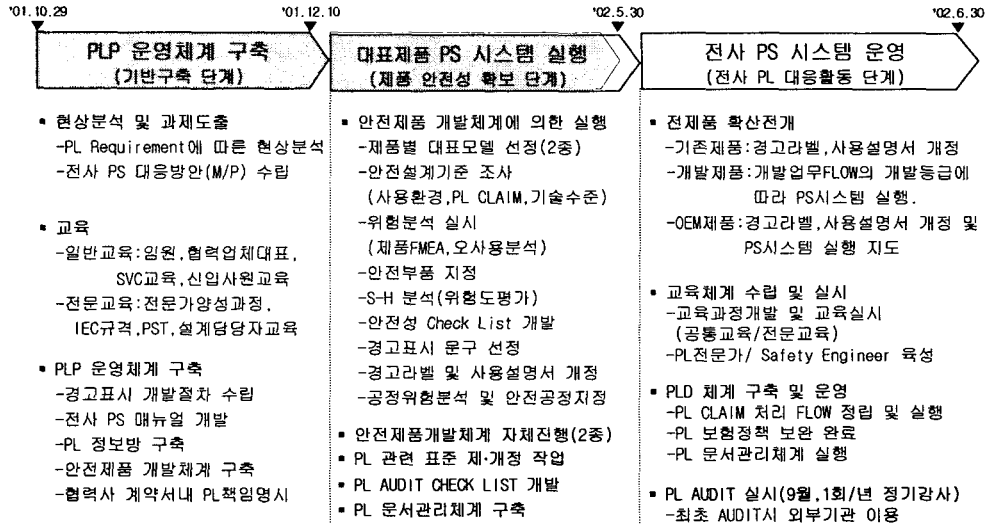
2002년 7월 1일 PL법 시행에 따른 PL Claim 증가가 예상되어 PS 대응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2001년 11월부터 PS추진조직을 구성하여 외부기관(㈜PL코리아)의 컨설팅에 따라 집중적인 활동을 실시함.

PL 요구수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PL 대응조직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PS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PLP 활동체계와 PL Claim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PLD 활동체계를 구축함으로써 PL법 시행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제품안전경영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PS 활동을 실시함.



- 2002년 7월부터 판매되는 제품은 PL요구 수준을 만족 시킴.
- 안전제품 개발체계 구축
(조사단계에서 ~ 출하이후 단계까지.)
- 안전성 기술을 적용하여 업계 동등이상의 제품 안전성을 확보.
- PL Claim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2002년 5월까지 안전제품 개발체계를 구축 완료하고, 2002년 6월까지 전제품 확산전개 및 전사 PS 시스템을 운영코자 함.



전사 PS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제품별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PLP체계 구축을 실시하였음

추진과제	실행내용	결과
전사 PS 대응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사 PS 매뉴얼 제정 안전제품개발체계 구축(개발업무규정에 포함) 	작성완료 (사내표준 등록예정)
전사 운영체계 Se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S 위원회 조직 구성 및 역할 정립 	완료
대응조직 & 지원체계	전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 PL 전문가 양성 과정(63명) 가스기기분야 PL법 대응세미나(29명) PL System 구축 PL담당자 W/S(19명) 설계개발담당자 자격인증교육(59명) PST교육(Tracking, 난연성, 절연등급 등) 전국SVC 소강교육(현장조사요청) IEC규격 교육 	완료
	임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장 이상 교육 협력업체대표 교육 	완료
	일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팀 교육 CCC교육(서울, 대전) 신입사원 교육(2회) 	완료 (총5회, 136명)
정보입수 및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입수 Channel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코리아,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수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전산시스템(Notes)내에 PL 정보방 운영(2002.1월~) - 사보 게시(사내소식지 2001년 5호, PL법 및 PS추진계획 소개) 	운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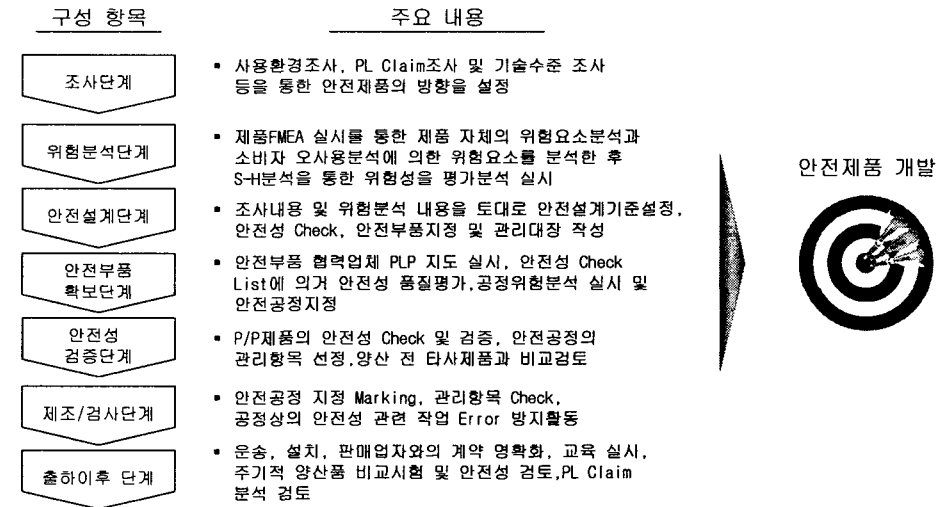
추진 과제		실행 내용	결과
PLP 활동 (사전예방 체계)	안전제품 개발체계 실행 (PS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별 대표모델 선정하여 안전제품 개발체계에 의한 실행 - 중점지도 2종(GOR, DWA), 자체진행 2종(MKR, RCP) - 활동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안전설계기준 조사(사용환경, PL Claim, 기술수준) ②위험분석 실시(제품FMEA, 오사용분석) ③안전부품 지정관리(안전부품 지정, 협력업체 PL계약서 작성) ④S-H 분석(위험도평가) 실시 ⑤안전성 Check List 개발 ⑥경고표시문구 선정 ⑦안전공정 지정관리(공정위험분석 및 안전공정지정) 	완료
	표준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표준 제개정(제품의 안전에 관련된 표준 제·개정 24종) 	-5/31
	표시상의 결함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련 경고표시 기준 개발 - PL 대응 경고라벨, 사용설명서 작성방법의 표준화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별 대표모델 컨설팅 실시제품 - 가스오브레인지, 식기세척기 - 김치냉장고, 전기압력밥솥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라벨 및 사용설명서 개정(전제품 확산전개) - 생산 전제품 및 OEM 제품(팀별 PS담당자 주도하여 추진) 	-5/31 (적용:6/1-)	
PLD 활동 (분쟁방어 체계)	PLD운영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 Claim 발생시 PLD업무 FLOW 정립 	-5/31
	PL 보험 운영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 보험 운영체계 구축 - 보험사별 보험정보 수집 - 협력사(부품, OEM, 소사, 설치) 보험정보 제공 	-5/31
	문서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 대응 문서관리체계 수립 - PS문서영 확정(완료) - PS문서 보관시스템 구축 및 실행 	-5/31

전사 PS 매뉴얼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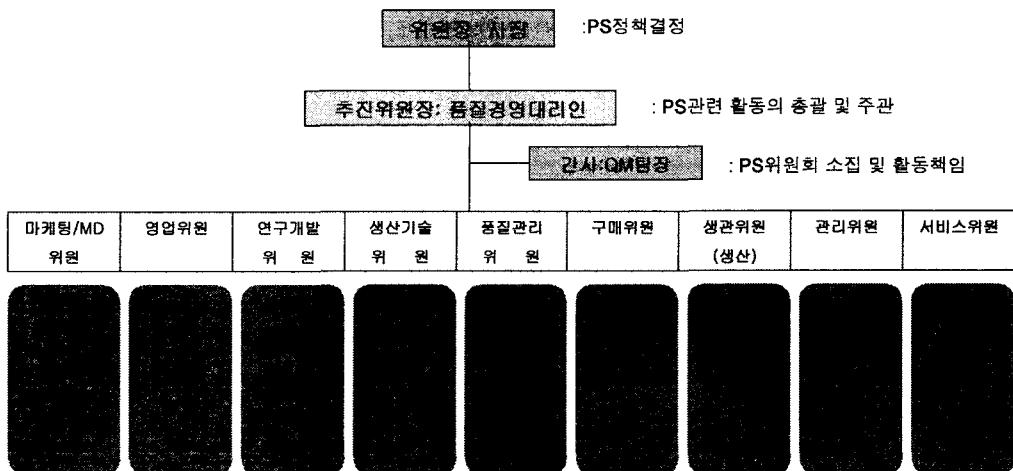
PLP 체계 구축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대하여 관련 부문별로 업무역할을 규정하고 PLD를 위한 Claim 처리체계 정립과 PL 소송에 대비한 작성문서, 보관문서를 명확히 함

구성 항목	주요 내용	PS 경영방침
PL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PS 경영방침, PS 위원회의 조직, 구성, 역할, 책임 명확화 	<p>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 상품기획에서 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제품안전기술을 정착시켜 고객만족을 추구한다.</p>
P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 Mind 고취를 위한 공통교육과 PL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체계 정립 	
PL Au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 Audit의 주체(품질경영팀), 역할, 책임, 실시기준 정립 	
안전제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품기획부터 서비스까지의 PS활동 정립 	
문서관리 및 기록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해야 할 문서와 보존해야 할 문서종류를 개발단계별로 명확화 	
PL Claim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 Claim 발생시 관련부서의 업무역할과 처리체계 기준 정립 	
PL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PL 보험가입을 위한 관련 부서별 업무역할 명확화 	
PL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 관련정보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여 안전제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PL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체계 정립 	

상품기획부터 서비스까지의 업무를 사용자의 안전에 Focusing하여 조사부터 출하이후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실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함



PS 정책 및 방침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안전제품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PLP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PS 위원회를 구축함.



부품불량으로 제품에 치명적인 결함을 발생시키거나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품을 안전부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부품의 관리 및 업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안전성단계

안전제품개발Guide

실시결과

- 조사단계
- 위험분석 단계
- 안전설계 단계
- 안전부품 확보단계
- 안전성 검증단계

- 안전부품 관리대상 작성
부품 고장발생시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을 안전부품으로 지정하여 타부품과 차별화 관리
- 1) 안전부품 계약서
가. 부품공급업체의 PL Claim 비용 부담 (부품결함이 원인일 경우)
나. 보증기간
다. Recall 시의 조치와 책임분위
- 2) 협력업체 PL 교육
- 3) 부품개발/관리
가. 안전부품에 대한 도면관리
나. 안전부품 인정시험
다. 협력업체 PLP 지도
라. 수입검사 기준 설정

- 제품별 안전부품 지정
- GOR : 111, 222, 333 (3종)
 - DWA : 123, 456, 789, 012 (4종)
- 안전부품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업무 수립
- 부품협력업체 계약서에 PL 사고시 책임부담 추가
 - 안전부품에 대한 도면 관리방법 영기(사내표준개정)
 - 안전부품 인정시험방법 지정(사내표준개정)
 - 수입검사 기준 설정(사내표준개정)

GOR 안전부품 관리 대상

NO.	부 품 명	시정방법	유형관리원칙	시정주기	실정여부
1.	노이즈 필터	관련규격입수	1. Box Type X-Capacitor 사용 2. 결함발생시점	중요도 중기별	상인
2.	드랜스포머	관련표준	1. Coil 저항 Check 2. 2차 동적전압 Check 3. 권선관리 방안	중요도 중기별	남양
3.	M/F Fpga & M'y	관련표준	1. 회로도크 관리	중기별기회	위험도분

기안문

제출일자: 2007-01-18
제출인사: 김성환
승인일자: 2007-01-27
승인인사: 김성환

부서: 기획팀, 품질팀, 영업팀, 마케팅팀, R&D팀, CS팀, 생산팀, 품질보증팀, 회계팀, 인사팀

첨부: 1. 안전부품 지정 신청서
2. 안전부품 지정 목록
3. 안전부품 지정 관리계획서

제출인사: 김성환
승인인사: 김성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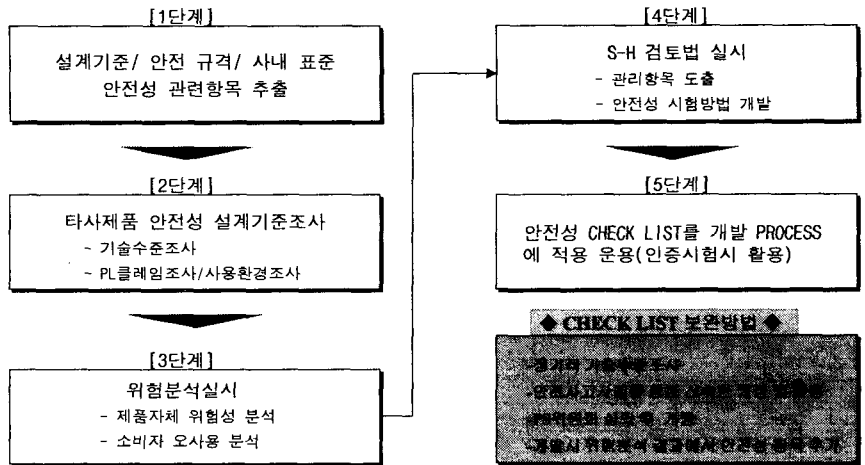
제출일자: 2007-01-18
승인일자: 2007-01-27

안전규격, 기술수준조사, 위험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안전성 Check List를 개발함

안전성단계

안전제품개발Guide

- 조사단계
- 위험분석 단계
- 안전설계 단계
- 안전부품 확보단계
- 안전성 검증단계



실시결과

오븐레이인지 안전성 Check List

식기세척기 안전성 Check List

구분	CHECK 항목 및 판공기준	결과	개선내용 및 최종 판공결과	비고	구분	Check 항목 및 판공기준	결과	개선내용 및 최종 판공결과	비고	
합계	1. 안전성 시험(소모성 부품은 사용제한 또는 설계에서 제외) (사용제한에서 사용작가 보충하도록 할 경우, 공구용 소모품은 제거할 수 있는 부품을 소모 소모품 검사할 것)	적용제한(인용된) 다각부 제외, 스키너 및 손잡이, 용접구부제 용접구 검사 (합계: 적지 없음) (소모품 제외)	적용	적용	적용	1. 안전성 시험(소모성 부품은 사용제한 또는 설계에서 제외) (사용제한에서 사용작가 보충하도록 할 경우, 공구용 소모품은 제거할 수 있는 부품을 소모 소모품 검사할 것)	적용제한(인용된) 다각부 제외, 스키너 및 손잡이, 용접구부제 용접구 검사 (합계: 적지 없음) (소모품 제외)	적용	적용	적용
	2. 설계에서부터 모든 설계의 개선은 사용자의 편의나 제조를 위한 것	제조소포함	적용	적용	적용	2. 설계에서부터 모든 설계의 개선은 사용자의 편의나 제조를 위한 것	제조소포함	적용	적용	적용
	3. 설계 도면에는 HAZOP 도면 또는 FMEA/FHA/FTA 도면을 사용할 것	HAZOP 도면 사용	적용	적용	적용	3. 설계 도면에는 HAZOP 도면 또는 FMEA/FHA/FTA 도면을 사용할 것	HAZOP 도면 사용	적용	적용	적용
	4. 설계 도면에는 사용자의 안전 설계를 위한 것 (안전성 관련 사항은 제외, OIT CASE)	HAZOP 도면	적용	적용	적용	4. 설계 도면에는 사용자의 안전 설계를 위한 것 (안전성 관련 사항은 제외, OIT CASE)	HAZOP 도면	적용	적용	적용
	5. 설계도면에는 설계목적대로 사용되고 부품사용목적 같은 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설계도면상에서도 설계자의 의도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검토할 것)	적용	적용	적용	적용	5. 설계도면에는 설계목적대로 사용되고 부품사용목적 같은 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설계도면상에서도 설계자의 의도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검토할 것)	적용	적용	적용	적용
	6. 설계도면상 부품은 모두 설계 목적을 달성 (HAZOP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것)	적용	적용	적용	적용	6. 설계도면상 부품은 모두 설계 목적을 달성 (HAZOP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것)	적용	적용	적용	적용
	7. PPE나 OSHA 법규는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준수할 것	적용(소모품 제외)	적용	적용	적용	7. PPE나 OSHA 법규는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준수할 것	적용(소모품 제외)	적용	적용	적용
	8. 설계시 사용 부품의 무게는 2.0kg 이상을 초과, 사용에 용이한, 단단한, 내충격성 부품은 적용할 것	적용	적용	적용	적용	8. 설계시 사용 부품의 무게는 2.0kg 이상을 초과, 사용에 용이한, 단단한, 내충격성 부품은 적용할 것	적용	적용	적용	적용
	9. 설계시 사용 부품은 사용자의 편의나 제조를 위한 것	적용	적용	적용	적용	9. 설계시 사용 부품은 사용자의 편의나 제조를 위한 것	적용	적용	적용	적용
	10. 설계시 사용 부품은 사용자의 편의나 제조를 위한 것	적용	적용	적용	적용	10. 설계시 사용 부품은 사용자의 편의나 제조를 위한 것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제조 공정상 오작업이나 작업 누락시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을 파악하여 공정을 관리토록 함.

안전성단계

안전제품개발Guide

실시결과

조사단계

위험분석 단계

안전설계 단계

안전부품 확보단계

안전성 검증단계

- 안전공정 지정관리
제조공정상의 결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작업 또는 작업 누락시 제품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공정 분석, 대책수립 및 관리.
- 오작업 방지 설계 (FOOL PROOF 설계)
- 중요관리항목 관리
- 불량시의 위험 경고

GOR 공정위험관리표

순서	공정명	위험요소	위험도	위험도	위험도	위험도	위험도
1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2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3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4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5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6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7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8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9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10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GOR PART

- 제품별 안전공정 지정
- GOR : PPP 공정, YYY 공정
- OMA : TTT 공정
- 안전공정 지정 및 관리업무 수립
- 공정분석에 의한 안전공정 지정
- 작업표준서 및 해당공정에 안전공정 마킹
- 안전공정 통계적 관리
- 작업자 교육 실시

- ◆ 제조결함 예방을 위해 안전공정에 대한 관리강화와 작업자 교육이 필요함.
- ◆ 양산제품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 시험이 필요함.

국내외의 규격연구와 PL 사례 조사, 일본 적용현황을 파악하여 경고 표시요소를 추출, 당사 제품특성에 적합하게 전사 안전관련 경고 표시기준을 개발함.(사내표준 등록완료)

국내외 규격연구

- 규격 상호 연계성 조사
- PL 사례 조사

- ISO Guide 51/37
- IEC 3864
- KSA 350
- AN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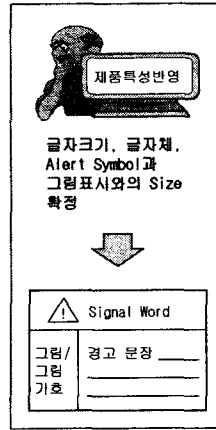
일본 적용현황 파악

- Guide Line 입수
- 공업협회 경고 표시사항
- 사용설명서 적정화 위원회
- 가전협회

- 경고표시 구성요소
 - Alert Symbol
 - Signal Word
 - 그림표시
 - 경고문장

- 제품의 경고 표시방법
 - 표기위치
 - 글자크기, 글자체
 - 경고유형
 - 색상

- 사용설명서의 경고 표시방법
 - Signal Word 구분 설명
 - 그림기호의 설명
 - 보관방법
 - 경고의 목적
 - 표기위치



안전관련 경고 표시기준 개발

오사용 분석과 S-H 검토법 실시를 통해 추출된 예견가능한 오사용에 대해 경고문구를 추출하고, 표준으로 등록된 경고표시기준에 의거 이를 반영한 사용설명서를 개발함

개선 후
(GOR70 예)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 △ 경고
- △ 주의
- △ 경고

경고

- 금지행위
- 허용행위

NO!

PLP 활동(표준 제·개정)

사내표준 제·개정

PL관련 표준의 제·개정을 통해 안전제품개발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PLP 및 PLD측면의 대책을 수립하였음

PL관련 사내표준 제·개정을 통한 사전예방체계 구축 및 분쟁방어체계 구축

[예시]

- PS 매뉴얼(제정)
(PLP 체계구축에 필요한 모든 활동 규정)
- 개발업무규정(개정)
(안전제품 개발 관련내용 추가)
- 경고표시 작성요령(제정)
(안전관련 경고표시(경고라벨, 사용설명서)작성방법)
- PL CLAIM 처리규칙(제정)
(PL Claim 처리절차 및 방법 포함)
- 구매기본규정(개정)
(안전부품 지정업체의 계약서에 PL관련내용 추가)
- 문서관리규정, 품질기록관리규칙(개정)
(PS문서 보존년한15년규정 및 PS문서일람표 추가)
- 안전공정지정 및 관리규칙(제정)
(안전공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정표준 3건
 개정표준 21건

PS 매뉴얼	구매기본 규정	설계변경 규칙	수입검사 규칙	품질보증 규정
PL CLAIM 처리규칙	진단업무 규정	도면관리 규칙	무검사제도 운영규칙	시정및예방 조치규칙
안전공정지정 및 관리규칙	문서관리 규정	부품인정 검사규칙	특채운영 규칙	중요품질문제 관리규칙
개발업무 규정	품질기록 관리규칙	공정관리 규정	OC공정도 작성규칙	품질보증 시험규칙
내부품질 감사규칙	외주지도 관리규칙	설계심사 검증규칙	작업표준서 작성요령	

5월말까지 표준 제·개정 완료

PL관련 표준 제/개정 주요내용

NO	표준명	분류번호	주요 제·개정 내용	비고
1	PS매뉴얼	TAM-B1-0000	PS경영방침, PS위험회구성, PL과목, PL감사, 안전제품개발, 문서관리, PL클레임처리 등 기록	제정
2	PL 클레임 처리규칙	TAP-F2-0800	PL CLAIM 발생시 업무처리절차 규정함.	개정
3	안전공정지정 및 관리규칙	TAP-K4-0200	공정위험분석과 안전공정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규정함.	
4	개발업무규정	TAP-J1-0000	제품개발 등급별/ 단계별(EVENT별) PL관련 실시내용 추가, PS단계부터 안전성평가	
5	내부품질감사규정	TAP-A7-0000	PL감사업무 추가	
6	진단업무규정	TAP-A7-0000	사내진단에 PL감사 추가	
7	문서관리규정	TAP-B2-0000	PS 문서의 보존기간 15년 설정	
8	품질기록관리규칙	TAP-B2-0400	PS 문서의 정의, PS 문서의 종류	
9	외주지도관리규칙	TAP-G2-0300	PLP 지도 정의, PLP 지도방법	
10	설계변경규칙	TAP-J1-0300	안전부품 설계시 설계주관부서장 및 품질부서장 승인 득후 실시, 설계시 안전성검토 실시	
11	도면관리규칙	TAP-J1-0500	안전부품으로 지정된 부품 : 도면에 안전부품 마킹, 안전부품관리대상 작성	
12	부품인정검사규칙	TAP-J1-0800	안전부품 인정검사, 안전부품지정 및 검사항목(관련부서협의), 부품승인원에 안전부품 마킹	
13	공정관리규정	TAP-K4-0000	OC공정도 및 작업표준서에 안전공정 지정, 작업표준서에 안전공정 마킹	
14	설계심사/검증서 작성요령	TAP-J1-0200	설계심사/검증서 안전성체크 및 심사자료에 포함	
15	수입검사규칙	TAP-M1-0100	안전부품 중점관리항목에 따라 검사, 검사성적서에 우측상단에 안전부품 마킹	
16	무검사 제도 운영규칙	TAP-M1-0600	안전부품은 무검사 대상에서 제외	
17	특채운영규칙	TAP-M1-0700	안전부품은 특채대상에서 제외	
18	OC공정도작성규칙	TAP-K4-0202	안전공정 정의, 안전공정 지정 및 마킹	
19	작업표준서 작성요령	TAP-K4-0201	안전공정 지정 표시, 불이행시 발생하는 결과 표시	
20	품질보증규정	TAP-M5-0000	품질보증활동 일람표 내 각 PL업무의 주관부서, 관련부서 표기	
21	시정 및 예방조치규정	TAP-M5-0000	PL클레임과 관련된 조치사항은 PL클레임처리규칙에 따름	
22	중요품질문제관리규칙	TAP-M5-0200	안전과 관련된 클레임사항은 PL클레임처리규칙에 따름	
23	품질보증시험규칙	TAP-M1-0900	품질관리담당부서장은 P/S, E/S 안중시험시 안전성 CHECK LIST에 의거 안전성시험을 실시	
24	구매기본규정	TAP-G3-0000	안전부품 검사성적서 마킹, 계약서상에 PL 및 리콜시 책임분담, 부품보증기간 10년이상 표기	

PLD 활동

PL CLAIM 처리 FLOW

소비자가 제품사용 중 발생한 안전과 관련한 Claim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확한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함.

서비스 센터	고객상담실 PL 담당	QA/연구개발	PS 위원회

PLD 활동

PL 보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PL보험정책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PL 보험에 가입하여 PL 소송에 대비한 PLD 체계를 구축함.

보험가입현황

보험 종류	대상 제품	가입 기간	보상 한도액	보험료	자기 부담금
가스배상 책임보험	가스제품 (GOR, GRA, GBR)	'02.1.22 - '03.1.21	△억원	△△만원	△만원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가스제품제외 전제품(OEM, 수입품 포함)	'01.6.4 - '02.6.3	▽억원	▽▽만원	▽만원

추진방향

- 정부의 PL보험 정책
- 보험사별 비교 검토
- 타사/전문기관 PL보험정보
- 당사제품의 특성 검토



- ◆ 효율적인 보험운영정책 수립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황조정 검토
 - PL단체보험상품 출시시 보험상품 비교검토
- ◆ 협력사 PL보험정보 제공

PLD 활동

PL 대응문서 정립

PS 활동에 의하여 생성된 문서를 토대로 작성해야 할 문서, 15년간 보존해야 할 문서를 PS 활동 단계별로 명확히 함. (보관시스템은 별도 구축예정)

단계	보관문서 내용	보관부서	단계	보관문서 내용	보관부서
경영일반	경영자의 안전관련 지시사항/실행기록 일직원 PL/PS 교육 기록 PS위원회 회의록 PLP AUDIT 결과	OEM부서	검증단계	ES 안전성 CHECK LIST 시험결과 ES 품평회 회의록 국내/외 안전규격 승인서	OEM부서 연구부서 OEM부서
조사단계	안전 설계기준 조사서 (사용환경/PL CLAIM/기술수준 조사표)	연구부서	제조/검사 단계	안전부품 검사성적서 협력업체 PL교육 실시결과 사용/설치/SVC 매뉴얼, 경고LABEL 작업지도서/QC공정도 안전공정 관리대장 작업자 교육실시결과(안전공정) 제조기록 중간검사 성적서(결과) 출하검사 성적서(결과) 안전성 시험설비 검증정 성적서 양산품 안전성 CHECK결과	OEM부서 OEM부서 연구부서 생기부서 생기부서 OEM부서 생산부서 OEM부서 OEM부서 OEM부서
위험분석 단계	위험분석 실시 결과 (제품FMEA/오사용조건분석결과) 해당모델 관련특허	연구부서 연구부서	기타	OEM업체 계약서 설치업자 교육기록 설치업자 계약서 서비스맨 교육기록	OEM부서 OEM부서 생산관리 서비스
안전설계 단계	설계기준서(안전부품 관리대장 포함) PS 안전성 CHECK LIST 시험결과 PS 품평회 회의록 도면(안전부품 마킹)	연구부서 OEM부서 연구부서 연구부서			
안전부품 확보단계	부품 인정시험 성적서(시방서 포함) 협력회사 PL진단 결과 부품협력업체 계약서	OEM부서 OEM부서 구매부서			

지금까지 실행된 내용을 기반으로 2002년 상반기 내에 PLP 체계를 구축하여 PL법 시행에 따른 PL대응체계구축 완료를 목표로 팀별 실행사항을 정리.

과	제	내	용	일	정	주관부서
대응조직 및 지원체계	PL Audit	• 당사 및 협력사 PL Audit 실시(1회/년) - 내용 : 경영일반, 안전설계, 안전성 유지관리 - 최초 AUDIT는 외부 전문가 초빙		'02년 9월중		품질경영팀
	교육	• PL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전문교육과정 (팀별 PS담당자 지속적 육성) - 공통교육과정 (당사 및 협력업체 PL교육 실시)		'02년 4월 ~		품질경영팀
		• PL 정보방 운영		지속적 운영		품질경영팀
	PS 위원회	• PS 위원회 위원명단 구성 및 활동계획 수립		'02.5월중		품질경영팀
PLP 체계 운영		• 타제품 수평전개(생산품 및 OEM) - 기존제품 : 사용설명서 및 경고라벨 개정		'02년 5월말		가스, 냉세, 생기, 품질, 기타관련팀
		• 안전제품개발체계 실행 - 개발제품 : 개발업무FLOW의 개발등급에 따라 PS시스템 실행.		'02년 4월 ~		

과 제	내 용	일 정	주관부서
PLP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 관련 사내표준 제. 개정 - 일괄 심의 후 제, 개정 등록 예정 • Safety Engineer 육성 - 인원: 최소 2명/제품별 - 역할: 안전제품 개발, 제품 Audit, PL Claim 사고 처리 지원 	'02년 5월말 '02년 4월~	품질경영팀 가스, 냉세, 생기, 품질, 서비스
PLD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 Claim 처리체계 구축 • 전사적 PL 보험 운영체계 구축 • PL 대응 문서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 	'02년 5월말 '02년 5월말 '02년 5월말	서비스, 품질 관리, 품질, 서비스 공장관리, 품질, 각팀